

불공정 하도급 시 시정명령·제재처분 동시 부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15일 내 지급 －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편집자 주]

1.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 하도급 제한 등의 의무 부과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종합→광역, 전문→기초)에서 처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공정 하도급행위 의무이행 강화(법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시 시정 명령과 함께 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동시에 부과 ②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법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는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재처분 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척기간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即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③ 처분유형 및 기간에 대한 일반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및 처분기간 가·감경 결정기준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최소화 * 영업정지 부과사유 이외는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발생, 고의로 위반 시는 처분기간을 가중하고, 처분전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법령을 최초 위반한 경우 기간 감경

2.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상품 중 계약·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보상기간이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 - 보증금 지급기일이 평균 90일로 서울보증의 30일에 비해 지연 ● 보상금 청구서류도 대지급금 관련 서류, 공사일지 등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불편과 심사기간의 장기화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증금 지급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내역서(최종분 제외), 대위변제 자료, 과거 6개월이 전 기성금 자료 등 생략 - 청구액 중 다툼이 없는 금액(조합 인정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지급(전체 60일 이내 처리)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일지(인력투입현황), 예정공정표 등 생략

3. 정해돈 회장, 기계설비건설업계 현안 건의내용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은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정해돈 회장이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장관님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 우리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나도 주계약자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관님, 그리고 LH공사 사장님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건설산업과 공생발전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발주제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회장 취임 이후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실행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낙찰제는 종합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와 자재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으로 큰 곤욕을 치렀지만 다시한번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독일 등 선진외국은 공공공사를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분리발주하고 있어, 건설한 중소기업업체가 육성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피해도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건설경제지의 입찰정보란은 토목, 건축, 전기 입찰정보로만 가득하고 설비는 한 건도 없어 참담한 심정이며, 우리협회 회원사들은 이러한 가슴 아픈 하소연과 함께 우리 기계설비공사도 입찰정보란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분리발주만 전면 시행되면 하도급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모든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한번에 해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생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발주제도 개선 시에는 반드시 공생발전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더불어 분리발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건설현장에 내국인 부족과 고령화, 그리고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취약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일감부족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지원방안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전문 건설사에게 경영상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전문업계는 건설근로자를 상시고용보다 단기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대 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금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각종 사회보험 외에 개개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4,200원)은 업계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겹쳐 퇴직금을 2번 지급하는 결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